

수 신 시 · 도건축사회장
(경유)

제 목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일부개정·시행 알림 [알림 2019-011]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9년 3월 고시된 행정규칙 및 4월 시행되는 건축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 회의 회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시행일자	법령 · 규칙명	주요내용
2019.3.14.	「건축구조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117호)	•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「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」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, 지반분류 등을 건축 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• 필로티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고려사항 규정 신설 필로티기둥을 사용하는 저층부터 고층구조까지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 마련 •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- 건축비구조요소 보완 · 신설(일반사항, 설계절차, 피난경로상의 계단 및 램프 등) -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보완 · 신설(일반사항, 설계절차, 도관,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로, 덕트, 파이프 및 배관 시스템 등)
2019.4.17.	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5810호)	• 위반행위 신고 처리 규정 신설 (현행) 규정 없음 (개정)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

붙 임 1. 「건축구조기준」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

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문 1부. 끝.

대한건축사협회 회 장



담당자 김예나 팀장 양성희 실장 강주석 국장 류치열 사무처장 이남식 부회장 김기석 회장 석정훈

협조자

시행 법제 230 - 423 (2019.4.2.) 접수

우 0664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8층 / <http://www.kira.or.kr>

전화번호 02-3415-6836 / 팩스번호 02-3415-6868 / kira4@kira.or.kr / 비공개